

1. 개정이유

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하고 있고,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9조에 열 공급에 대한 허가요건,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요건 등을 따르고 있음. 다만,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,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,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허가(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5. 30. ~ 06. 14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미포함
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법 제9조 및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 허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. 이 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과 전기의 허가 기준을 심사한다.

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허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의 허가신청등) ①·② (생 략) <u>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<u>④</u> (생 략)	제7조(사업의 허가신청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법 제9조 및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 허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. 이 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과 전기의 허가 기준을 심사한다.</u> <u>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허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 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